

종국적으로 이는 국회가 법률로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환경소송 일반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입장을 밝힌 점에서 앞으로의 환경소송들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하급심판례들을 보면, 위 봉은사 공사중지가처분이의사건에서와 같이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보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행정소송 판례중에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판례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³⁾

2. 환경소송의 유형

환경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민사소송의 범주에는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⁴⁾, 환경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⁵⁾ 등이 주로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환경침해(공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예컨대 폭파작업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계장피해, 유조선 좌초로 인한 어업피해 등)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피해(예컨대 유독물질 누출로 인한 중독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범주에는 환경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취소청구⁶⁾ 또는 환경보호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취소청구⁷⁾ 등이 문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송의 범주에는 환경침해적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 2) 청담동 골프연습장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으로는 윤진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1995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1995. 제9-27면 참조
- 3) 예컨대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에서는, 건축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보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이상 피고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건축을 불허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1995. 7. 확정됨).
- 4) 주로 가처분의 형태로 제기될 것이며, 대표적인 예가 앞서 본 청담동 골프연습장 설치금지가처분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5) 대표적인 예가 온산 공단 소재 공장주들에게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건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 6) 예컨대 영광지역주민들이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영광원전 5. 6호기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 7) 예컨대 앞서註 2)에서 보았던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등이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이상과 같은 환경소송들을 지역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는 쟁점은,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인 적격과 피보전권리의 구성문제이고,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 적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인 또는 원고가 되어 그 저지를 위한 가처분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에 기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권 침해만을 이유로 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하급심판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⁹⁾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법리구성의 묘를 살린다면 지역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위 봉은사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와 같이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진보적인 하급심판례가 계속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

- 8) 미국의 경우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1965) 사건에서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이 최초로 문제되었다. 이 사건은 뉴욕 허드슨강 유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업허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미국 항소법원(2nd circuit)에서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미관적(aesthetic), 보존적(conservation), 레크레이션적(recreational) 측면에서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Federal Power Act상의 원고 적격 요건인 "aggrieved party(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에 의한 환경소송 제기가 급증하게 되면서 수많은 환경파괴적 사업들이 저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 9) 예컨대 大阪國際空港公害訴訟에서 大阪高等裁判所 1975. 11. 27. 판결에 의하면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은 각 사람의 인격에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총체를 인격권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는 권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생활상의 방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어도 그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미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판결 이후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러한 공해로 인한 差止請求에 있어서 인격권을 근거로 그 差止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윤진수, 앞의 판례평석, 제16-18면 참조(이 평석의 저자 역시도 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담동 골프연습장 사건에서는 이에 관한 주장이 없었으므로 대법원에서도 이 점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적격의 범위가 민사상 가처분사건의 경우 보다 대체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경향인 것으로 보여진다.¹⁰⁾ 즉,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이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인정될 수만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¹¹⁾ 예컨대 아직 판례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내려진 사업승인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4. 환경소송의 기획방안 : 민변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환경소송들에 대하여 아직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인 방향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립되어야 할 법이론들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법이론들은 앞으로 환경소송이 많아지고 환경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환경소송이 자꾸 늘어나면 법원으로서도 환경문제들에 대해 점차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사업자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환경파괴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송을 대비하여 신중하게 그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소송을 더욱 많이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 환경수준을 끌어 올리는 첨경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0) 예컨대 청담동 골프연습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처분에 소론파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금지를 구할 사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윤진수, 앞의 판례봉석 제25면을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11)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주민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12) 이 문제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영광 원전 5, 6호기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환경소송 유형들을 보면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경제적 이익이 개재되지 않은 순수한 환경적 이익에 근거한 공익소송(예컨대 생태계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또는 행정소송)은 극히 드물었던 것이 현실이다. 사실 한 개인이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이러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결국은 환경단체나 지역운동단체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이나 지역운동단체들의 현실을 보면, 환경운동에 있어서 환경소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법원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환경전문 변호사들을 자체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상당한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의뢰할 만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므로 민변을 통한 환경소송의 기획 및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즉, 민변의 조직력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한, 민변은 환경소송을 기획,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환경소송을 민변이 자체 기획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소송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들이나 지역운동단체들과 민변이 연대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하면서 소송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민변과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우선 환경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사례조사는 환경단체들이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료가 민변에 제공되면 민변 환경위원회 소속변호사들 중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게 될 것이다.¹³⁾ 그러면 담당 변호사(또는 담당 변호사팀)는 자료를 제공한 환경단체와 연락하여 우선 소송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가능한 소송의 형태,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선정 등과 같은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는 환경단체의 실무간사 등과 몇차례 실무모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측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현지조사,

13)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변의 소속 변호사가 먼저 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사례를 정하여 환경단체들 중 한 곳에 현지조사 및 자료송부를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송당사자들과의 면담 등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담당 변호사는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는지, 또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소송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미리 검토하고 나서 소송제기여부 및 소송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⁴⁾

환경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또는 신청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 전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또는 신청인)로서의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몇 명(예컨대 그 지역의 환경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3-5명 내외)만을 당사자로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상의 이익을 향유하여 왔고 그러한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침해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인증 진술서를 작성받아 소장(또는 신청서)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

다음으로 환경소송의 수행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승소사례금 약정을 하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기타 실경비는 관련 환경단체나 민변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따로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소송의 특성상,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송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송진행 중에 감정비용 등과 같은 비교적 다액의 실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제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한 소

14)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사업시행을 극렬 반대하는 입장파, 사업시행은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을 경우),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여 제각각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환경단체의 원고 적격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당해 환경단체의 회원들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상의 이익(예컨대 recreational use or aesthetic enjoyment)을 침해당할 것인지를 진술서(affidavits) 등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이로써 그들이 당해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의 영역(zone of interests)내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Lujan v. Natural Wildlife Federation : U.S. Supreme Court 1990 참조).

송경비를 각출하거나 환경단체나 민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승소 가능성 문제이다. 환경소송을 제기할 바에는 연구 검토를 충실히 하여 승소할 수 있는 환경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제기할 만한 기획소송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환경소송의 제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변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소송진행과정에서 포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원 역시도 그 구체적인 판결이유야 어찌되었든 환경소송의 판결결과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여론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환경소송의 기획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민변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소송들이 기획되고 훌륭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변 집행부는 물론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열렬한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치고자 한다.

경과보고1)

변호사 김 선 수

1. 머리말

노동법 개정문제는 문민정부가 수립된 직후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대다수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규정들이 입법 권리에 전혀 없는 (정상적 입법 기구가 아닌) 비정상적인 군사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투쟁에 근거하여 성립된 김영삼 정부로서는 당연히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장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 악법의 개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방기하고 있던 김영삼 정부가 올해 총선 이후 노동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구성하고 개혁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1) 모임을 포함한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96년 사회개혁파제와 연대방향>이라는 공동정책 워크샵을 계기로 노동법 개정, 환경, 경제정의, 여성 등 제반 사회개혁,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대응방향을 논의한 이래, <'96 사회개혁파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발표, 4·11 총선 공동대응, 문화방송파업 공동대응 등의 연대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개혁 관련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 개혁 방향> 공동토론회를 지난 6. 18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개위는 지난 8. 6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그동안 일곱 차례의 토론회를 마감하고 지난 13일 노동법개정안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을 포함한 7개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제외)에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관계개혁 시민·사회단체 공동토론회를 지난 달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개혁'이라는 주제로 '노개위 및 노사관계개혁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발제 및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김선수 회원이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노개위의 구성과 경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경과를 보고하였고, 김윤환(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이광택(참여연대) 교수가 각각 △노사관계 개혁의 문제와 방향 △노동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양재덕(민주주의 민족통일 인권연합 의장), 이종구(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선수(민변) 등이 보조발제 및 토론에 참여 하였습니다. 여기에 게시한 자료는 토론회에서 김선수 회원이 발제한 '경과보고'와 노사관계개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을 위한 민변 의견조사서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현 시점에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 노조 운동이 성장하여 민주노총을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40만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는 이상, 민주노총 세력을 무시하고는 경제 성장이나 산업 평화 달성을 기본 조건인 노동자들의 협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득불 민주노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현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노동3권 보장 현실이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꼭 현재 OECD에 가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으나, 어쨌든 현 정부는 OECD 가입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가입 과정에서 노동3권의 보장 수준이 문제로 되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OECD 가입을 위한 정비 작업으로서도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등 국제 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해 수차례 걸쳐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1995년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위원국으로 재선출되었고, 또한 1996년 6월 10일 ILO 제83차 총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들의 권고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 동기야 어떻든 이번의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사 관계의 개혁은 우리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고, 그 개혁 방향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 방향을 규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 작업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본적 원칙에 충실하고, 또한 가능한 한 노사 양 당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노사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이 조만간 확정될 이 시점에서 노개위의 활동을 점검하고 시민 단체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노개위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 진행 경과 및 향후 예정

0. 1996. 4. 16. 노동부장관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노동법 개정 및 노사관계 개혁 추진
의사 천명

0. 1996. 4. 24. 김영삼 대통령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구상
발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설치.

신노사관계의 5대 원칙으로 1)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생산과 복지의 공동체 형성, 2) 참여와 협력의 원칙-열린 경영과 생산적 노동운동, 3)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책임을 수반한 노사자치주의의 구현, 4) 교육 중시와 인간 존중의 원칙-인적 투자와 삶의 질 향상, 5)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국제 기준과 관행의 존중

0. 1996. 4. 30. 국무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 의결

0. 1996. 5. 7.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996호로 제정 공포)

0. 1996. 5. 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위원 30명)

공익 대표 10명: 현승종 전 국무총리(위원장),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부위원장), 박우동 전 대법관,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김창렬 방송위원회 위원장,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전무, 김금수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정광모 소비자보호협회 회장, 인명진 행쇄위 위원,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사 대표 10명: 이광남 택시노련 위원장, 박현수 화학노련 위원장, 이주완 한국노총 사무총장, 양경규 전문노련 위원장, 백순환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황정현 전경련 부회장,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박종현 삼양사 대표이사, 심갑보 삼익물산 대표이사

학계 대표 10명: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배무기 서울대 교수(상임위원),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 박래영 홍익대 교수, 윤성천 광운대 교수, 손창희 한양대 교수, 김유성 서울대 교수,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곽수일 서울대 교수

특별 위원 4명: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안평구 통상산업부 차관, 최승부 노동부 차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0. 1996. 5. 15. 노개위 3개 분과 설치. 1분과(노사관계 의식 및 관행 개선) 박래영 교수
(홍익대) 2분과(노동관계법, 제도 개선) 윤성천 교수(광운대), 3분과(공공부문 및 노동행정

쇄신) 박우동 변호사

20명의 전문위원 위촉. 수석전문위원 이원덕; 1분과 책임전문위원 김태기(단국대), 비상근 전문위원 이주호(한국개발연구원); 2분과 책임전문위원 이철수(이화여대),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비상근 전문위원 강희원(경희대), 오문완(울산대); 3분과 책임전문위원 이종훈(명지대), 비상근 전문위원 이정택(노동교육원), 박기성(성신여대); 조사팀 이병남(엘지 상무), 이정식(한국노총 정책국장), 어수봉(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김태현(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영배(경총 상무), 김훈식(경총 조사1부장), 신철영(경실련), 박윤배(대우경제연구소), 주완(변호사), 이성희(월간 길 기자)

0. 1996. 5. 21. 자문위원 30명(공익 및 사회단체 12명, 학계 12명, 언론계 6명) 위촉 및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0. 1996. 5. 27.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국민공청회

0. 1996. 6. 3. 광주 지역 국민공청회(사회 정병휴 조선대 총장, 기조발제 박래영 홍익대 교수, 보조발제 박광순 전남대 교수, 이홍재 광주일보 논설위원, 신용석 한국노총 광주본부, 정병태 로켓트전기 전무, 정웅태 전시민연대)

0. 1996. 6. 5. 부산 지역 국민공청회(사회 구본호 울산대 총장, 기조발제 배무기 서울대 교수, 보조발제 임정덕 부산대 교수, 배철웅 국제신문 논설위원, 김진수 한국노총, 조용국 명진고무, 김성국 부산 경실련)

0. 1996. 6. 14. 1차, 6. 18. 2차, 6. 19. 3차, 6. 20. 4차 워크샵 개최

0.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6차례에 걸쳐 12개 주제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학자 2명, 공익대표 2명 등이 각 주제에 관하여 입장 발표)

1996. 7. 16. 근로시간, 휴일, 휴가/복수노조(사회 윤성천 광운대 교수, 주제발표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유희춘 한일이화주식회사 대표, 조우현 숭실대 교수, 최승모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광택 국민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1996. 7. 18. 해고제도/노사협의제(사회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주제발표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유희춘 한일이화주식회사 대표, 허병도 공인노무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금동신 단국대 교수, 이규창 단국대 교수)

1996. 7. 22. 임금, 퇴직금 제도/노동조합의 활동(사회 김유성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채창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환공 주식회사 대주가구 상무이사, 김수복 공인노무사, 박시룡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원석 외국어대 교수, 배진한 충남대 교수)

1996. 7. 23. 노동위원회 제도/쟁의행위(사회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주제발표 남일삼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문성현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이해혁 주식회사 풍산 이사, 이상덕 대덕공업주식회사 전무, 현천욱 변호사, 이원재 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김황조 연세대 교수)

1996. 7. 29. 여성 및 비정규 근로/단체교섭과 단체협약(사회 윤성천 광운대 교수, 주제발표 노진귀 금속연맹 기획실장, 권재철 사무노련 부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윤용신촌사료주식회사 상무이사,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박동진 단국대 교수)

1996. 7. 31. 공공부문 노사관계/공익사업의 분쟁조정(사회 손창희 한양대 교수, 주제발표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문해성 한국전력 전무, 이대길 주식회사 디케이박스 대표,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상윤 연세대 교수, 박영기 서강대 교수)

0. 1996. 8. 6. 노개위 최종 종합토론회 '96년 노동관계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참석자 이병태 한양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0. 1996. 8. 13.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원회 구성(노동계 2명, 영영계 2명, 공익대표 4명). 위원장 배무기 교수, 공익위원 박래영 교수, 윤성천 교수, 임종률 교수, 인명진 목사, 노동계 위원 박현수 한국노총 화학연맹위원장, 양경규 전문기술연맹 위원장, 경영계위원 조남홍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임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8. 14.부터 9. 8.까지 노동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0. 1996. 9. 9. 제7차 노개위 전체회의.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원회로부터 개정 초안을 보고받고, 확정하기로 예정.

0. 1996. 9. 14. 또는 20.경 노개위 개정최종안 대통령에게 보고

(2) 평가

1) 노동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기구로서 노개위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공개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에 걸쳐서 노동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군사 기구에 의하여 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집권 세력의 자의대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노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의 기본 노선으로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노개위의 종합토론회에서 이병태 교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관계의 본질 그 자체를 떠나 생각하여서는 아니되고, 노사 관계의 대립적 측면을 인정하고 그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여 협조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립은 노사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바, 바람직한 노사 개혁을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본질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구조를 설정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노사 개혁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협력적 측면에 주안을 두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노동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또 선진적 노사 관계와 산업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모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개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노개위가 수차에 걸쳐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나타난 입장을 보면, 노동계에서는 (예전에는 복수 노조 금지 문제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번 공개 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 입장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복수 노조 금지 조항,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정치활동 금지 조항,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및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한 및 행정관청의 간섭 조항의 철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노동자의 경영 참여, 고용 보장과 안정, 노동시간의 단축 등 노동조건의 개선 및 여성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경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시간외 근로 수당 할증율의 저하, 노동자 파견의 법제화,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대표로 참가한 노개위 위원이나 토론회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다.

노개위의 종합토론회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노개위의 대체적인 입장은 집단적인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렇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개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노사관계의 전제로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또 국제적 여론에 의한 압력도 상당하여 현 정부로서는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차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면서 노개위라는 틀을 만들어 마치 이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또는 정부의 양보인 양 호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과 경영의 탄력화를 위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전혀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서로 연계되어 바터 형식으로 개정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노동3권의 보장과 회복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국제 기준의 준수와 헌법상 기본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경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사회복지 제도나 근로시간의 단축 등 보완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히 있으므로, 위 양자를 타협적인 입장에서 무원칙하게 절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4) 노개위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시민 단체들의 입장은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개위는 공개토론회를 이끌어 오면서 소위 '공익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빌미로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를 관철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공익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부분

들은 시민, 사회단체 속에서 토론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이 아니며, 실제 시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노개위 위원장이 취임 인터뷰에서 "교사는 하나의 성직이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노개위 위원장의 위와 같은 보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관점은 노개위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3.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1) 8개 단체의 공동 활동의 경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등 8개 사회, 시민 단체들은 1996년 2월 6일 공동 정책워크샵을 계기로 노동법 개정, 환경, 경제, 여성 등 제반 사회 개혁과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활동을 하여 왔는 바, 간략한 공동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 1996. 2. 6. '96 노동, 시민, 사회단체 정책 워크숍'
- 0. 1996. 2. 23. '96 사회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선언
- 0. 1996. 3. 21.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한 4당 정책위 의장 초청 토론회
- 0. 1996. 3. 22. MBC 파업 사태에 대한 긴급 토론회
- 0. 1996. 3. 26. 4.11 총선 후보 등록에 즈음한 노동, 시민, 사회 8개 단체 공동 기자 회견
- 0. 1996. 6. 18. '열린 사회를 향한 노사 관계 개혁 방안' 공동토론회
- 0. 1996. 8. 20. 노사관계 개혁 시민, 사회단체 의견 조사서 취합

(2) 노동법 개정에 관한 공동 대응

1) 노사관계개혁 문제는 사회 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산업민주주의의 정착과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 및 세력 지형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서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사안이다. 노개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공익 대표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우리 나라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어 이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그 입장을 밝히고 공동의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위 8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노동법 개정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정리하여 왔는 바, 1996년 8월 20일에는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서'에 대한 각 단체의 답변서를 취합하였다. 당시 민교협, 민변, 전국연합, 여연 등 4단체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구두로 입장을 설명하였다. 당시 취합된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있어서는 복수노조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조항,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의 무조건 폐지와 ILO 기준에 따른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둘째, 개별적 노사관계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과 여성보호조항의 개악 반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기초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도 및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도입 반대 또는 보호규제의 강화 의견이 다수이고 (전국연합, 민교협, 여연), 민변의 경우 근로자 파견제도에 반대하고 정리해고요건의 강화를 주장하나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경실련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셋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번의 노사관계 개혁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노동법 개정 투쟁의 주요 쟁점이었고,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관련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직업훈련과 소개 기능의 강화,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번의 토론회는 시민, 사회단체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의 출발점으로서, 또 정리된 입장을 공론화하여 일반 국민과 노개위에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의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다.

노사관계개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을 위한 의견조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총론 >

1. 노개위의 개혁 5원칙에 대한 입장

지나치게 참여·협력을 중시하고 노사관계의 본질인 '대립'을 도외시하고 있는바, 노사간의 대립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바람직한 노사개혁을 위해서는 이를 살려 나가야 함

< 의제확장 >

1. 사회복지, 조세, 경영민주화 등 노사관계개혁과 연관된 사회개혁과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에 집중하고, 장기적 과제로 유보

< 집단적 노사관계법 >

1. 노조설립과정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가. 복수노조 문제

- 복수노조 설립 가능 범위를 일정 정도로 제한함이 없이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는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3조와 ILO협약 제87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복수노조는 상급단체 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만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조의 자유 설립과 선택의 자유를 완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임.

나.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문제

- 현역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단결권의 범위를 제한함이 없이 전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해고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

- 실정법상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의하여도 충분히 해고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라. 노조설립신고제도

- 현행법상 노조설립신고증교부가 있어야만 법내 노조로서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에 명문으로 '노조설립신고시 노조가 설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 유니온 샷 문제

- 노동조합의 조직강화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니온 샷 제도는 인정되어야 하며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진 노조에 허용하는 것으로 그 요건 역시 완화하여야 한다.

단, 유니온 삼 제도 인정 문제를 복수노조제도와 연계시켜서는 안될 것임.

2. 노조활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가. 제3자개입금지제도

- 무조건 전면 폐지하여야 함에 대하여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나. 정치활동 금지 문제

- 노조의 정치활동은 아무런 조건과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허용의 조건으로서 단위조합활동의 경우 노조예산사용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자주결정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함.

다. 경영 참가 문제

- 노조의 경영 참가 원칙에는 찬성하나 그 구체적인 제도 내지 방법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라. 작업중지권

-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법에 명문화하여 한다.

마.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교섭권

-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바. 의무적 단체교섭사항

- 범 해석의 문제이므로 실정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짐.

현행법을 유지하면 됨.

사. 전임자 임금 지급

-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실정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아.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실정법에 명문화하는데에 대하여는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림.

자. 행정관청의 개입, 간접 조항(규약 변경·보완 명령권, 단체협약 변경·취소 명령권)

- 노조의 자주성 보장을 위하여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3. 단체행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가. 직권중재제도

- 직권중재제도는 폐지하고 긴급조정제도는 유지하나 그 경우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은 일정 정도 연장해도 무방하다.

나. 사업장 이외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사안임.

다.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허용 범위와 요건은 공익사업에 준하여 인정하면 될 것임.

라.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여부 및 대체근로자의 범위

-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며 대체근로자의 범위는 신규채용 금지와 용역 금지에서 나아가 동종 부서 내 대체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마. 쟁의조정제도

- 알선제도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바. 쟁의 대상

- 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쟁의행위가 일어나 있는 상태'라고 개정하여야 한다.(신인령 교수 의견에 찬동하기로 함)

사.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 노사 자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설정법에 인정 아니면 불인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도 명문화하여서는 안 될 것임.

아. 공무원, 교원의 단체행동권

- 공익사업에 준하여 허용하면 될 것임.

자. 냉각기간 존폐 및 조정전치제도

- 냉각기간 존폐 문제는 직권중재제도 존치시 논의되는 문제인바, 직권중재제도가 존치된다면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냉각기간을 없애고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7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냉각기간'이라는 표현도 '쟁의예고기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조정전치제도는 공익사업장의 경우 도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불필요하여 그 이유는 임의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임.

4. 기타

가. 노동위원회 제도

-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속은 현행 노동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하고,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 위촉시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수를 늘려야 할 것임.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복시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도입에 찬성함.

다.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유효기간

- 현행법 유지안에 찬성함.

< 개별적 노사관계법 >

1. 임금과 관련한 쟁점

가. 임금의 범위--- 기준임금의 단일화 문제

현행의 평균임금제도와 통상임금제도가 그 이론적 취지와 적용대상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

나. 시간외 수당 할증률 변경 문제

현행 150%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 임금지불 확보제도(임금 우선변제제도, 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 퇴직금 노사공동부담제나 금융기관 의무적립제)

1. 현행 임금·퇴직금 우선변제제도의 유지에 찬성하며, 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는 법원의 판결대로 퇴직금 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퇴직금 노사공동부담제에는 반대하며, 토직적립금 금융기관 의무적립제는 기업의 도산이나 사업주의 변칙활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이의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라. 퇴직금--- 단계적 폐지 문제(경총의 입장)

적극 반대한다. 국가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의 수준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다.

마. 휴업 급여 지불문제

현행 70%선의 유지에 찬성한다.

2. 근로 시간 문제와 관련한 쟁점

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문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전제로 수용하며, 일일 최대 10시간, 주 최대 56시간 이내에서 허

용될 수 있다. 단, 업종(현재 근로기준법상 특별취급되는 업종)과 여성, 미성년자 등에 따라 별도의 제한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도 전제되어야 한다.

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3. 모성보호의 문제와 관련한 쟁점

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여성할증 등

현행수준이하로 개악되는 것에 반대한다. 노동법의 사회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직도 모성보호 차원에서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함에도 현재보다 더 개악시킨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산전, 산후 휴가의 문제

ILO 권고수준인 3개월로 한다.

4. 휴가제도 문제와 관련한 쟁점

가. 월차제도 폐지문제

현행법 유지에 찬성한다.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휴가가 선진국처럼 2개월 이상 된 다음에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 유연휴일, 휴가제

반대한다. 현행법 유지

5. 고용 형태의 문제와 관련한 생점

가. 파견근로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파견근로가 현실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주장이 오히려 사용자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이 오히려 파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상용 노동자들의 노동 및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나. 파트타임제

인정하되 현행 노동법상의 모든 노동자보호규정들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고용안정과 관련한 생점

가. 정리(집단)해고 사유 명문화(집단해고규제법 제정) 문제

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한 제한을 91년 12월 판례 전의 89년 5월 판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하는 집단해고규제법 제정에 찬성한다.

7. 기타

가. 4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문제 (규정 형식의 문제 포함)

전면적용되어야 하며, 시행령이 아닌 모법의 적용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현행 최소 취업연령 13세 문제

16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

1. 공동대응의 필요성

노사관계개혁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의 한국사회의 사회구조 및 세력지형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서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공통의 문제인바, 어떠한 형태·수준으로라도 반드시 공동대응이 필요

2. 합의방식 및 공동대응의 수준

- (1) 모두 동의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 10여개 정도를 합의하여 공동대응하고, 나머지 사항은 개별행동 허용
- (2) 각 단체가 중시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3) 공동입장의 발표, 연대기구결성(동의하는 단체는 가능한한 많이 참가도록),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개발

3. 공동대응 일정

- (1) 8개단체의 입장을 상호 검토·합의하는 토론회
- (2) 공동입장의 발표 및 연대기구 결성은 8월안에 가능해야 함
- (3) 노개위 일정에 맞추어 공동사업프로그램 미리 설정하여 실천

나의 개성과 빛깔1)

박 영 립 회원

이번 여름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유럽여행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13기)한 다음 변호사를 개업(83년 10월)하고 나서부터 매년 휴가철이 다가오면 한 번 쯤 생각해 보았던 일정이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큰 맘 먹고 우리부부와 중1년생, 초등 5년생 등 4식구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10여일 만에 6, 7개국 도시를 도는 일정이라서 각 도시의 문화나 그들의 사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각 도시에서 만났던 한국인 현지 가이드들이 꼬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기차의 기착지인 파리에서 만났던 예술을 사랑하는 멋쟁이 여성, 런던에서 정장차림을 하고 조용조용 안내를 하던 신사, 인스부르크에서의 낭만적인 문학도, 정열적으로 한껏 멎을 부렸던 베니스, 로마의 가이드 등 모두가 나름의 개성과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그들의 개성과 빛깔을 비교해보면서 원래 그들의 타고난 천성이 그러하겠지만 5년씩 넘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잊혀진 그 곳 사람들의 상황과 사고방식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한지 십 여 년이 지났지만 자신조차 제대로 반추해보지 못하는 쫓기는 일상에서 과연 나 자신은 어떤 개성과 빛깔을 가지고 있을까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변호사로서 나 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과 빛깔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회원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회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이번호부터 새로 가입하는 신입회원의 인사의 말과 추천 회원의 추천사를 실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어 인사 말을 기고한 신입회원은 지난 8월 월례회에서 가입승인 된 박영립, 정주식 회원과 허경미(특별회원) 회원입니다.

추천사

유 중 원 회원

한국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박영립 변호사의 간략한 프로필인 즉 1953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경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한 후 1984년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러면 10년이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니 변호사 세계의 쓴맛을 단맛을 두루 맛보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창국회장을 보필하면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 당시 그의 사람됨과 성실성을 잘 아는 혜안을 가진 김창국회장께서 그를 총무이사로 발탁하였음은 물론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원래 그와 특별한 연고는 없었다., 하지만 필자 역시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사 공실에서 자주 그와 마주치는 동안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되고 몇 가지 일을 계기로 하여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된 것 같다. 옛말에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필자가 별볼일 없어도 나이가 많은 탓에 형님으로 불리고 있다. 그를 잠깐 동안이라도 만나면 참으로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 늘 은화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상대방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처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평소에 밖에서 감지할 수 없는 무서운 끈기와 인내심, 불의와 부정에 대한 시골사람 특유의 선천적인 저항정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런 그가 민변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맴돈 그 동안의 정황이야 필자가 잘 알지 못하지만, 뒤늦게나마 민변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가입을 추천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민변과 그 회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제와 이 나이에

정 주 식 회원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을 정도로 민주화된 문민시대에 뒤늦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암울했던 군정은 종식되고 역사에 남고자 하는 문민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화된 이 세상에 물권변호사로서 10년 세월을 보낸 후에 새삼스럽게 민변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그래도 정주식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변에 들어갑니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 청춘의 아쉬움도 없는 이제와 이 나이에 민변에 들어갑니다. 5·6공 시절과 문민정부 시절의 차이점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민변에 들어갑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끼리 공식적인 변호사모임은 제쳐 두고 훌륭한 일만 독점하여 왔다고 생각해 왔던 민변동네 인간좋은 박성민, 이석태, 백승현 등등의 변호사님들로 부터 인간적으로 한 수 지도받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더욱이 평소 존경해 마지 않던 박영립 변호사와 함께 들어간다니 부끄러움도 한결 더해집니다.

사실 한달 한달 사무실을 꾸려 나가기에도 정신이 없는 무능한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변 회원들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항상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었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을 같이 해보자는 권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10년을 보낸 지금에서야 사회가 변호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은 필연적이고,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은 법이어야 하며, 법대로만 된다면 공정한 게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도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10년 세월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니다.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부처가 부처인 것은 화향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쌓은 공덕으로 성문연각 내지 권승을 구하지 아니하고 발심하여 최상승에 의지하여 원여법계 중생이 일시에 동득하도록 화향하겠습니다.

이제와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인들 있으랴마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낭만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소개말을 줄이고자 합니다.

정주식에 대한 500자

차 병 직 회원

신입회원을 소개하는데 그의 플로필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대관 정도를 펼쳐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짧게나마 소개를 하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기대를 밝혀보자는 의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주식 변호사를 신입회원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비회원으로 지내온 8년 동안에도 그는 심정적으로 회원이었던 것이다. 항상 우리 모임을 지켜보면서 동조도 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비판해 왔다. 그의 영입은 다른 몇몇 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때늦은 것이므로, 소개라는 요식행위는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여러 도움 덕분에 내가 먼저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그의 그러한 도움이 이제 다른 회원들에게도 끼쳐지기를 기대한다.

LETTER FROM Allison Kyungmi Heo

August 21, 1996

Dear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a Democratic Society:

Thank you for welcoming foreign attorneys to your ranks. It is a privileg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join the Association for a Democratic Society. I would also like to especially thank Attorney Jong Han Oh and Attorney Young Tae Yang for introducing me to the Association.

For those of you who do not yet know me, please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myself. I am a U.S. attorney, licensed under New York law, and presently a foreign legal consultant with Shin & Kim. I work primarily in the banking and securities department of my law firm. I am finishing up my second year with Shin & Kim, having joined the firm upon graduating fro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in 1994. Prior to attending law school, I attended Yale University where I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with a view to going to law school. Between college and law school, I worked as an editor for the Bilateral Trade Division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for one year.

While attending Georgetown, I had the opportunity to work one summer as a

research assistant to Professor Stephen Cohen, who served as a Deputy Secretary of State in the Human Rights Divisi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That summer, Prof. Cohen was serving as an expert witness in the class action suit brought by Filipino torture victims against the estate of Ferdinand Marcos in the State of Hawaii. I assisted Prof. Cohen in preparing his testimony. We researched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s, among others, to establish personal liability on the part of Ferdinand Marcos by showing the existence of a chain of command and personal knowledge of Marcos of the torturing of civilians by his military. As some of you may know, the class action was successful.

Despite my continuing interest, I have not since been involved in matters of human rights and justice. I am, therefore,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use the law to promote democracy. Although my plans are to return to the U.S. next Spring, I hope that boundaries will not prove to be a barrier to continued joint efforts.

Thank you again for opening up the Association to foreign attorneys. I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your efforts and to meeting you all.

Very truly yours,

Allison Kyungmi Heo

Allison Kyungmi Heo

추천사

양영태 회원

許暉微(ALLISON KYUNGMI HEO)씨는 예일대학 영문학과와 조지타운법대를 졸업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1995년부터 저희 세종합동법률사무소 증권·금융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미혼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허변호사는 제가 보기에도 능력이 우수할뿐더러 맑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성장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이 여러모로 쉽지 않을 터인데도 항상 씩씩하면서도 예의 발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변호사가 바쁜 와중에도 저희 사무소와 다른 미국 여성 변호사와 함께 신림동의 고아원에서 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말도 잘 하는 편인데 본인이 읽고 쓰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몇 달째 국민학교 교과서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해본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허변호사의 영어는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교선 회원 등 저희 사무소에서 유학간 변호사들의 지원서도 허변호사가 다 써주었습니다. 허변호사는 영문학을 해서 그런지 더 창조적인 일을 해 보고 싶어 하고, 미국에서 마르코스를 상대로 필리핀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참가한 바도 있어 인권 활동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한 회원과 제가 허변호사에게 민변에 가입하여 공익활동을 해 보기를 권하였고, 이에 허변호사가 흔쾌히 동의하여 민변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허변호사는 아직 미국에서 변호사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내년이면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서 실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도 허변호사가 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 민변도 국제연대활동, 영미법 공부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변호사가 미국에 간 다음에도 민변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새로 가입한 허변호사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해주시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수 나쁜 날

이석태 회원

그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별이 들어 간 흐릿한 하늘로 보아서는 연일 찌던 날씨가 다소 누그러질 법도 하였는데, 후덥지근하니 바람도 불지 않아 더 더웠다. 좁은 지하 주차장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다. 꼬불꼬불한 지하 1층을 곡예 하듯이 돌아 지하 2층으로 내려 가니 거기도 만차였다. 잠시 망설였다가 거꾸로 차를 몰아나가기 시작했다. 몇 번 다른 차나 벽에 부딪힐 듯이 하면서 기어코 옥외 주차장에 도착했다. 거기도 차가 꽉 차 있었다. 나는 별 도리없이 길 목에 - 경비실에 키가 한 별 보관되어 있으므로 - 차를 그대로 세워 두고 사무실에 들어 왔다.

사무실의 내 방에 들어 와 앉아 오늘 하루 스케줄을 살펴 보았다. 다행히 오후 중인이 없는 - 무죄를 다투는 - 형사 사건이 한 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없는 날은 용하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다. 자리에 앉자 마자 여기 저기서 꼭 받지 않아도 될 전화들이 걸려 오고 만나고 싶지 않은 방문객이 두 사람 찾아 와 상당한 시간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나서 미루고 미루었던 준비서면의 초를 잡으려고 기록을 펼쳤더니 11시가 지나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최고의 paralegal인 박사무장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들어 선다. 김모 씨 사건 첫기일이 내일이라는 전화 메모가 제 책상위에 있네요(법원으로부터 구두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다). 아니 이제 그걸 말해 주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휴가 중에 김양이 받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그는 막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친 참이다). 구치소에 있는 두 사람의 중년 남자 얼굴이 떠 올랐다. 봉천동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 대표 격인 그들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처음 경찰에 구속되었을 때 한 번, 그뒤 구치소에서 한 번, 보기는 두 번 보았으나 기소 전이어서 재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허름한 남방샤쓰, 굵은 손마다, 연행되던 날 입은 상처라고 보여 준 종아리의 짓자국이 생각났다. 가난이 무슨 부끄러움인가요 / 지금은 무등산 무허가 초막에 살지만 / 기러기 떼도 날아 가는 어느 날엔가 /

햇빛 쟁쟁한 마당 전나무 숲아래 / 시름 많은 사람들 오고 가게 할래요 / 근심 많은 사람들 찾아 오게 할래요. 지리산에서 죽기전에 가정법률상담소 편집실에서 이따금 보던 고정 회시인의 시 일부가 뇌리를 스쳤다.

내일 재판이라니 오늘 어떻게 해서든 가 보아야지. 나는 다시 한 번 오후 스케줄을 보았다. 오후 재판을 끝내고 갈 수 있을까. 나야 증인이 없지만 다른 사건들이 많지 않을까. 그 래 재판 전에 가는 게 낫겠다. 지금 11시니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접견 시간 넉넉잡고 한 시간, 그 다음에 ... 간 김에 (이 순간 어제 받은 전화가 갑자기 생각났다.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 넷을 배당받아 재판중인데, 엊그제 접견을 잤는데도 그중 한 학생이 재차 변호사를 꼭 만나 보아야 겠다는 전갈이었다) 이군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30분, 합해서 3시간 정도 소요되니 (접심은 거르나 어떡하나) 오후 사건에 그려 저력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조양에게 접견신청서 작성을 부탁했다.

내가 가방을 꾸려 막 나가려는 데 전화가 왔다. 오후 사건 피고인의 부인이었다. 그동안 유리한 증인 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왔는데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었다. 여기 삼성역인데요, 10분이면 도착할꺼예요. 다급한 목소리가 먼 듯도 하고 가까운 듯도 한 곳에서 들려 왔다. 안 만날 수가 없었다. 지난 기일에 신청한 증인을 철회하는 마당에 새로운 증인이라도 찾았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조양에게 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접견 시간을 취소하라고 했다. 오후 재판을 마치는 대로 가야지.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부인으로부터는 유력한 증인을 만나 달래고 또 달래었는데 완강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실패담이외에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는 없었다. 나는 증언 어려우나 진술서는 써 준다고 하니 그것만도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하며 오히려 부인을 위로했다.

일찌기 민사든 형사든 그것이 재판의 형태를 띠게 되면 쉬운 게 없는 법이다. 하물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임에랴. 단지 참고인으로 불려 조사를 받는 데도 걱정되 밤잠을 설치고, 몇마디의 간단한 증언을 했을 뿐인데도 그 긴장때문에 유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사람들이다. 검찰총장도 피의자의 입장에 서면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고 식은 땀이 흐르며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유명한 기드온 사건의 교훈이다.

일전에 원로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예전엔 미결 구금일수 산입으로 양형을 조절했지요. 똑같은 형이라도 정상이 나쁜 경우에는 산입일수를 적게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많이 산입하고 그런 식이었지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미결구금 일수를

얼마나 산입하느냐에 관하여 배석 판사들과 합의를 하곤 하였는데, 그중 한 판사가 합의할 때마다 미결구금일수는 산입일에서 하루도 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는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때마다 그 판사와의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도 화가 나 당신 맘대로 하라며 기록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날 다른 배석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무개 판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영감님, 사실은 그친구 학생 시절에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구속되어 예심까지 받았답니다, 결국 정식 재판전에 석방은 되었지만 그 때까지의 고통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그 판사의 고집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문제는 그 판사의 전권사항으로 맡겨 버렸지요, 허허.

내가 피고인의 부인과 오후 법정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시간 개정을 10분 앞둔 1시 50분이었다. 그날 과천에 마침 모임이 있었는데, 재판 오기 직전에 그날 만나기로 한 과천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 의논 끝에 그 친구가 5시 30분까지 구치소로 차를 가져와 나를 데려 가기로 시간을 조정했다.

법정에 들어 서니 방청석은 물론이고 변호석도 꽉 차 있었다. 내가 아는 변호사도 둘 있었다. 입회 서기가 앉는 책상 위에 기록이 몇 건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더 일찍 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과연(피고인 신문사항이 길어 증인 없는 사건으로 먼저 할 수도 없기에) 오후 재판을 제때 마치고 일과시간 전에 접견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제가 이 재판을 마치고 접견을 가려는데 가능 할까요? 서기석 맞은 편에 앉아서 기록을 정리중인 주임에게 다가가 다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해 보았다. 글쎄요, 소환된 증인이 23명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결심을 했다. 그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올 테니, 혹 그전에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건이 끝나 제 사건 차례가 되면 재판장님께 좀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나는 내 이름과 내가 맡은 사건을 알려 주고, 다시 걱정스레 쳐다 보는 피고인의 부인에게 정황을 설명한후 법정 밖으로 나왔다.

법원을 나오니 우지직 하며 하늘이 깨지는 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할수없이 전철을 타고 사무실 지하차고로 달려 갔다. 우산이 없어서 온몸이 땀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없을 정도로 흠뻑 젖었다. 차문을 열면서 헬끗보니 아침에는 없던 작은 우그러짐이 왼쪽 차문 윗쪽에 나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구치소로 차를 몰고 갔다. 오늘 따라 거리의 차는 왜 그리도 많은지.

재판중이라는 사정을 말하고 접견을 최대한 짧게 하였는 데도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가 다시 법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오후 5시가 거의 되어 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친구에게 뼈째를 쳐 음성 녹음으로 구치소에 와 기다리지 말라고 알렸다.

그런데 걱정한 바와는 달리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 끝나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재판의 기록이 책상에 수북했다. 23명의 증인이 다 출석하는 걸까. 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변호사들 다음에 하기로 작정했다. 일단 접견을 마쳤으니 만큼 마음을 가라 앉히고 다른 사건의 진행을 살펴 보았다. 가만히 보아하니 무죄를 주장하는 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들 모두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 증인도 하나인 경우가 드물고 어느 쪽에서 신청했던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치열했다(다만 검사가 앉아서 물어 보는데 대개 변호인은 엉거주춤하게 서서 신문하는 게 달랐다). 나이가 지긋한 피고인도 있었고 중학생 또래의 피고인도 있었다(전자에게는 이 따금 '당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후자에게는 경어가 생략되었다). 사건에 따라 무엇이 불만인지 격앙된 목소리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에게 직접 적지 않은 신문을 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피고인들의 외양을 보니 손목에서 수갑은 풀어 져 있었으나 입고 있는 수의 바깥으로 팔뚝과 등이 오랫줄로 매여져 있었다. 형사소송법 280조는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게하고 있는데, 이 오랫줄은 신체구속에 해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관 없는 것일까. 지금처럼 법정내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 주저 주저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던 때처럼 오랫줄을 풀어 달라고 해 보나. 신사복을 말끔히 차려 입고 변호사와 같이 앉아 재판을 받는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며 갈등이 생긴다. 미국에 있을 때 보니 매일 몇 명씩 총에 맞아 죽던데 필경 우리보다 폭력적인 그들은 신사복 입고 재판 받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수의를 입고 오랫줄에 묶여 재판 받는다.) 재판부도 단순히 검찰과 변호인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문사항을 캐물었다. 어떤 사건은 변호인이 국선인지 아예 변호인을 제쳐 두고 재판장이 전권을 행사했다. 질문과 답변이 꼬리를 무는데 복잡한 사건이라는 인상이 들 뿐,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흘러 간다. 아까부터 다른 사건을 구경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 두었던 책을 꺼내어 읽고 있었으나 나이가 든 탓일까 아니면 주위가 산만한 탓일까, 얼마 못 읽고 도로 넣는다. 변호사는 이렇게 종종 원하지 않는 송사 구경꾼이 된다.

나는 비교적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편이라고 듣고 있고 병치료도 하지 않는 편인데 오후

에 상담 서 너 건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 사람들의 말을 장시간 듣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진실성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변호사의 이력이 볼을 수록 실감이 난다. 지난간 사건중에서 능력부족으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성실성이 부족하여 충분히 변론을 하지 못한 사건은 세월이 약이 되지 않고 가슴에 못으로 남는다. 내겐 그저 그런 사건의 하나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생사를 좌우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법률가의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경험이 쌓일 수록 더 해 간다. 올더스 혁슬리는 "45년의 연구와 공부를 한 뒤에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좀 더 친절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 저 재판부는 피로하지 않은 것일까. 법정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정리는 몇시에나 오늘 이 자리에서 떠들던 탄식과 한숨을 잠재우고 법정문을 닫을 것인가. 모든 사건에 관여하여 물어 보는 재판부의 열정과 검사와 변호인이 간과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예리함이 인상깊다. 그래도 그가 초인이 아닌 이상 조금씩 피로함이 쌓이지 않을까. 재판전에 기록을 면밀히 보고 나왔어도 개정 직후에 하는 재판과 - 내가 담당한 사건처럼 - 오후 늦게 하는 사건의 경우는 집중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루가 저물어 가면/ 이 현명한 노판사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판결도 졸기 시작하고 라고 프레이져 심슨도 노래하지 않았던가. (몇해 전에 동료 변호사 몇사람과 같이 견학을 가서 본 동경지방법원의 텅빈 방청석이 떠올랐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딱 한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마침내 사건을 호명하고 변호인석에 들어 섰을 때는 변호사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반면 방청객은 아직 상당수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구경꾼은 몇이고 재판을 받으려 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몇인지分辨할 수 없었다. 사건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이었다. 사무실에 돌아 오니 여기 저기서 전화 연락이 와 있었다. 차를 마시고 숨을 돌리고 있는 데, 전화 벨이 울렸다.

야, 너 어떻게 된거야, 한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서 구치소 직원에게 물어 보니 별씨 접견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 어, 내 뼈째 메세지 못 받았어. 뼈째? 사무실에 두고 나왔지. 이런, 사정이 생겨서 먼저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이제 재판이 끝났어, 미안하게 됐네. 이파가 보세.

정말 운수 나쁜 날이었다.

하루감옥체험기1)

이유정 회원

여름휴가를 하루 남겨둔 날, 특별히 해야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년에 한번뿐인 여름휴가인 만큼 하루라도 그냥 헛되이 보낼수 없다는 의무감으로 신문 영화광고란을 뒤적이다가 민가협 간사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민가협에서 주관하는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감옥체험”이라는 행사에 참가해 달라는 것. 이른 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명동성당 입구에 만든 실제감옥과 똑같은 크기의 모형감옥에서 하루동안 감옥생활을 체험하며 양심수의 감옥생활 고통을 공유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양심수들의 실상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인데 변호사 중에 섭외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 나라도 하루동안 감옥에 가(?)달라는 애원 반 협박 반의 부탁이었다.

더운 여름날 모형감옥에 갇혀 하루를 지낼 생각을 하니 귀찮은 생각이 들어 내가 사회적 저명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극구 사양을 하였으나 저명인사가 아니라도 좋다고 사정을 하는데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시간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별 고생이야 시키려구. 기껏해야 한나절인데 책이나 읽으면서 대충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족들에게는 내일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면회와서 잡지책이나 넣어달라고 여유를 부렸고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구경(?)하겠다고 대답하였다.

1996. 8. 10. 아침 명동성당 입구에 마련된 모형감옥을 보는 순간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높이 2미터, 폭 70센티미터, 길이 2미터, 넓이 0.75평의 실제 독방과 똑같은 크기. 파란 수의를 갈아입고 자루에 옷가지와 소지품을 모두 집어넣고 포승에 묶여 명동성당

1) 이 글은 모임이 양심수를 비롯한 400여 양심수의 석방과 자유를 앞당기고자 민가협을 비롯한 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8.8~10) 일정 중 양심수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하루감옥체험’에 참여하고 쓴 것입니다. 하루감옥 체험에는 이유정 회원 외에 김칠준, 박수근, 김선수, 천정배 회원등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언덕길을 맨발로 걸어갈때부터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체험자들에게 실제와 같은 감옥체험을 시켜주어야겠다는 의욕에 넘치는 교도관들의 기합이 시작되었다. 양심수의 고통에 동참해 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자진해서 행사에 참가한 다른 분들의 태도와 하루전날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평대신 닦의 처지가 되어 끌려온(?) 나의 태도가 다를 수 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가장 최연소인 때문인지. 맨발로 포승줄에 묶여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토키뜀등 온갖 기합을 다 받아야 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 전 수번과 이름을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땅에 쳐박하고 발로 걷어채이는 수모를 당했는데 장난삼아 구경온 남동생이 보기에도 눈물이 핑 돌정도였다고 하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이상 말해 무엇하랴. 실제상황이 아님에도 말할수 없이 참담한 기분이었다.

0.75평이 어느정도의 크기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키가 큰 사람이 누우면 꽉차는 정도의 길이에 한팔을 옆으로 쭉 펼수 없는 정도의 폭. 세발짝 이상을 떼어놓을 수 없는 흥청하게 말하자면 관보다 조금 더 큰정도라고 할까. 그 안에 들어앉아 더위를 견디면서 하루종일 나는 “갇힌 자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형벌인가. 더구나 0.75평의 좁은 공간에 한 인간을 가두고 사회와 격리시키고 심지어 다른 죄수들과도 접촉할 기회를 박탈하였을 때. 가두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 사육당할 때 갇힌 사람의 영혼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에게는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사촌언니가 있는데 언젠가 그 언니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동생이 보내준 엽서의 그림을 보며 산도 넘고 내도 건너고 나무위에 올라가 하늘도 바라본다. 생각은 구만리 장천까지.... 나는 자유롭다”

그때 나는 편지를 읽으며 0.75평 독방에 갇힌 채 엽서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또 보며 바깥세상을 그리워하는 단절의 고통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감옥에 갇혀서도 생각만큼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부러워 했었다. 그러나 얼마나 철없었던 생각인가. 독방에 감금된 자들의 영혼은 숨쉬기조차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인가를 보거나 읽지않고 지루한 시간을 메꿀 능력이 없는 나로서는 온종일 “96 양심

수석방을 위한 캠페인” 팜플렛과 벽에 붙어있는 “수칙사항”을 되풀이 읽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었고, 점심시간에는 100% 보리로 지은 밥과 단무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징벌방에 가두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억지로 먹어치우는 수 밖에 없었다. 오후에는 교도관들이 방안을 검사하고 규칙을 위반한 죄수들은 포승줄로 꽁꽁 묶어 감방에 집어 넣었는데 내 방에서는 그 전날 체험자가 먹다 남긴 캔커피가 발견되는 바람에 졸지에 포승줄에 묶여 감방안에 갇히는 징벌을 받기도 했다. 어찌나 세게 목을 눌렸는지 아프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내가 징벌 받는 모습을 보자 교도관들에게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를 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등 결코 연기로만은 보이지 않는 진짜 연기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나는 10여분만에 징벌을 면할 수 있었다.

유난히 기나긴 하루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보라색 머리수건을 쓴 민가협 어머니들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옥돌이를 시작했다. 자유로운 거리를 걷고 싶은 양심수들의 희망을 대신해 침묵으로 명동성당 앞길을 걷는 나이든 어머니들의 모습. 쇠파이프도 화염병도 들지 않고, 두손을 묶은 채 구호 한마디 외치지 않는 침묵의 행진을 지켜보며 그 분들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모두 깊이 폐인 상처같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행진이 끝나고 기다리던 출감식. 모형감옥에서 나오는 나를 껴안으며 “우리 아들도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인데”하고 울먹이던 백태웅씨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잊을 수 없다. 체험자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에게 둘러싸여 그 분들의 아들과 남편이 하루 빨리 가족들 품에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기원했다. 그 날이 바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실현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미국유학기1)

김선수 회원

1987년 6월 시민 민주화 투쟁과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및 12월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권교체의 실패를 사법연수원에서 경험하고,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7년 가량이 지나니 모든 기운이 소진하였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던 그 해 5월에 민변이 설립되었으므로, 나의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민변과 연륜을 함께 한 셈이다. 노태우 정권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노동운동 탄압과 함께 나는 노동 사건 변론에 특히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나의 능력 범위밖에 있었다. 그리하여 좌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민정부로 들어선 김영삼 정권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군사 정권과 비교하여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서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특히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은 세계화니 국제 경쟁력의 강화니 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군사정권하에서보다 더욱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법원의 태도 또한 변화된 것이 없었다. 나를 지탱하던 힘에 한계가 느껴졌다.

그럴 즈음 사무실에서 안식년 제도의 도입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었다. 구성원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 도입에 동의하게 되었다. 잠정적으로 변호사로서 6년 근무하면 1년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유급 휴가 1년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되,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정리되었다.

나는 애당초 노동 분야 쪽으로 전문화하고자 하였으므로 노동법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외국의 대학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이철수 선배(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미국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노사

1) 이 미국유학기는 현재 시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김선수 회원이 작년 7월에서 올해 7까지의 미국 코넬대학에서의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쓴 글입니다.

관계대학(Industrial Labor Relations School; ILR School)을 소개하여 주었다. 코넬대학은 아이비리그 중의 하나이고, 캠퍼스가 아름다우며, 코넬대학이 있는 이타카라는 도시는 전원 도시로서 휴양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철수 선배는 코넬의 노사관계대학이 그 분야에서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진보적인 교수들이 많으며, 특히 여성 교수들이 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코넬 노사관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노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던 박영범 박사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78학번으로 IBM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유학하여 코넬 노사관계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병훈 선배를 소개하여 주었다. 위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 대학으로부터 1년간 객원연구원(Visiting Fellow)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특히 이병훈 선배는 집문제 등 여러 가지 미국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해 주었다. 외국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병훈 선배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코넬대학이 있는 이타카시는 뉴욕시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학 도시로서 전원생활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 발간된 미국 관광 안내책자에는 코넬대학이 미국에서 캠퍼스가 제일 아름다운 대학으로 소개되어 있다. 학교안에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으며, 매우 넓은 플랜테이션이 있다. 겨울에는 학교안의 플랜테이션이 눈썰매장으로 변한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까지 사슴이 내려오고, 집 창문 앞에 있는 소나무에 새와 다람쥐가 와서 놀았다. 이타카시는 빙하로 인해 형성된 커다란 카유가호수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숫가로 공원이 여러 개 있어서 언제든지 호수가 공원에 나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쉴 수도 있다. 카유가호수는 남단에서 북단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크다. 주위에 포도밭이 많아서 포도주가 유명하고, 또 과수원이 많이 있는데 철마다 과수원에 가서 마음껏 따먹고 싸게 사 올 수 있다(이것을 picking이라고 한다).

체육 시설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야외 테니스코트가 대학과 고등학교 또는 공원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겨울에는 유료이기는 하지만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도 있는데 이용료가 싸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골프를 많이 칠수록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열심히들 골프장을 찾았다. 나의 경우는 골프를 칠 줄 몰라 골프장을 가보지 못하였다. 겨울에는 스키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많

이들 스키장을 찾았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5회까지 1인당 5달러에 스키 장비를 모두 빌려주고 스키타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수영장도 학교나 YMCA 나아가 아파트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키, 아이스 스케이트, 로울러 스케이트, 야구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실 그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자연경관 속에서 도서관에 쳐 박혀 공부만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되었다. 미국의 사회제도는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넓은 땅과 잘 보존된 자연은 정말로 부러웠다. 미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및 자본 우위의 질서 그리고 백인 우위의 토대 위에 형성된 사회로서, 국가의 역할도 실질적인 복지 정책의 확충 등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경찰이나 감옥도 사기업에 맡기는 것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다만 넓은 땅과 무궁한 자원 그리고 잘 보존된 자연만큼은 부럽기 짝이 없었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의 1년간 생활하는 동안 공부보다도 여행에 더 치중했는지도 모르겠다. 손님맞이로 여기저기 관광을 안내해야 했기 때문에 1년 있는 동안에 뉴욕을 10여차례 오갔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4번 다녀왔고, 워싱턴에도 서너 차례 다녀왔다. 차를 운전하여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세시간 반, 워싱턴까지는 7시간 걸린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올란도의 디즈니월드와 서부의 캐년과 요세미티 등을 여행하였으며,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를 거쳐 왔다.

코넬 노사관계대학에서는 객원연구원들에게 연구실이나 직원을 제공하지는 않고 도서관의 지정 좌석(carrel)만을 제공하여 주었다. 범대에 객원연구원으로 온 판사의 경우 3명이 같이 사용하는 연구실과 직원을 제공받았는데, 노사관계대학에서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사관계대학의 경우 건축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무실에 여유가 없었다.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공사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왔고, 그런 연유로 인하여 1년 내내 공사 소음에 시달리다가 왔다. 학교에서 특별히 객원연구원에게 요구하는 바도 없었다. 그래서 객원연구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강의를 듣고 싶으면 교수에게 미리 말하고 청강하면 되고, 세미나 등에도 스스로 찾아서 참가하면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법이나 노동 운동 등에 관한 강의에 참가해 봤으나 언어 장해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함으로

인하여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영어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었고, 결국 1년이라는 세월은 어학에 소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고 말았다. 영어의 말하기와 듣기는 포기하고 귀국하기 전 몇 달 동안 개인적으로 여자 선생으로부터 영어 작문(writing) 지도를 받았다. 내가 영작을 하고 강사와 함께 읽고 교정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받았는데, 그 강사는 나의 작문중 하나(Why I Became a Lawyer)를 'The Bookpress'라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화 잡지에 게재해 주기도 하였다. 물론 그 선생이 교정을 완전하게 본 후에.

코넬대학에는 대학원 과정에 한국인이 약 150명 가량 있고, 학부까지 합치면 약 5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다고 하는데, 학부생의 상당수는 교포2세라고 한다. 그런데 전교조 부위원장인 유상덕 선생이 역시 객원연구원으로 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코넬대학에 와 있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현장 활동만 하다 보니 책 볼 시간이 없어 한계에 이른 듯하여 재충전의 필요성을 느껴 조직에 건의하여 1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내어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도 입장이 비슷하였기에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교원 노조와 교육제도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고 있었다. 또 영남대학교에서 생산자 조합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 이승현 교수가 객원교수로 나와 같은 시기에 코넬 노사관계대학에 왔다. 그리하여 유상덕 선생, 이승현 교수, 이병훈 선배 등 4명이 자주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바둑을 두는 등 하며 놀기도 하였다.

노동법 개정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뉴딜정책하에서 1935년 제정된 연방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Wagner Act)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NLRA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방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가 노동조합의 선거 및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 관계 업무를 처리한다. NLRA는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2차 보이콧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Taft Hartley Act)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 Wagner법과 Taft-Hartley법은 미국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의 레이건과 부시 등 공화당 정권하에서 반노동자적 정책이 십수년간 계속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운동의 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잘 드러나듯이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하락하였다. 특히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였다.

그에 따라 노조 조직율의 계속적인 하락이 미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노동실무가와 학계에서 제기되었고, 노조 조직율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노조 조직율 저하의 매우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노동법의 결함과 사용자들의 반노동자 정책이 지적되었고,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노동법의 개정이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클린턴 정부는 노동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Dunlop Commission). 던롭위원회는 노동법의 개정 방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고능률 생산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실시하여야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 중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캠페인을 제한하며 1차 단체교섭 체결 실패시 중재의 도입 등 노동조합의 조직을 용이하게 하고, 노사 분쟁 해결 제도로서 경직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 낭비적인 행정이나 사법에 대체하여 사적인 분쟁 해결 제도 (특히 Arbitration)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던롭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노동계도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아니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영계와 공화당은 특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조직에 저배,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저배, 개입하는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NLRA를 개정하여 그러한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던롭위원회의 권고대로 미국의 노동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미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법의 개정 문제는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만큼이나 절박한 형편이나, 그 전망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둡다.

1995년 10월 워싱턴에서 코넬 노사관계대학과 NLRB가 공동주최하는 NLRA 제정 60주년 기념 토론회가 이틀에 걸쳐 열렸었다. 많은 학자들과 NLRB 실무가들, 그리고 노조 운동가들 및 경영자들이 참여하여 미국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미국 노동조합 조직을의 하락에 대한 반성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1995년 11월 실시된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선거에서 종전의 서비스 모델에 반대하여 새로운 조직 강화 모델을 제시한 스위니(Sweeney)가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코넬 ILR의 한 교수는 위 선거 운동 기간중 워싱턴으로 직접 가서 스위니의 선거 운동을 해 주었다. 대학교수가 노총 위원장의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AFL-CIO 신집행부는 최우선 과제를 노조의 조직 강화에 두고 모든 정력을 이에 집중하였다.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노조조직가를 육성하고, 노조조직후에도 노조조직시와 같이 조합원들을 동원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등의 다양한 전술들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과연 미국 노동운동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AFL-CIO의 위와 같은 노력은 미국 노동운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코넬 노사관계대학의 교수들 중에는 AFL-CIO 위원장 선거 과정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협력적 노사 관계와 노사 쟁방이 승리하는 교섭(win-win bargain) 등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강조하는 그룹의 주장은 던롭위원회의 권고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사 노무 담당 관리자들을 코넬 노사관계대학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였다. 코넬 노사관계대학의 중요한 고객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 선경, 한전, 포철, 현대자동차, 엘지 등의 인사 노무 담당 관리자들이 코넬 노사관계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도 외국에서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의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다. 사용자가 파업 기간 중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파업의 경우는 제외하고) 파업 노동자를 영구 대체(permanent replacement)할 수 있고, 파업이 끝난 후 파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대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판례, 대학교수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는 판례, 노조 선거 운동 기간중 노조조직가의 사업장에서의 노조 선전 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례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례들이 많아서 그러한 판례들을 읽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 왔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예컨대 소위 시카고 학파의 학자들) 미국의

NLRA가 노동조합을 특별 취급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철폐하고 노동 관계도 전적으로 시민법 원리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읽고 있자니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국제화,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압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세계의 노동운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찌되었든 노동자는 직접 생산자로서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고, 사회의 기본 핵심 구성 단위의 하나인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노동운동의 보장과 발전은 우리 사회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에서 구체적인 것을 배우기보다는 원칙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 것 같아 공허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1년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예기치 않게 딸을 얻었다. 미국의 경우 출생지주의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딸을 하나 얻은 것이 미국 생활의 결과 가장 확실하게 남은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1년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에 가서 1년 휴식을 취한 셈이 되었다.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1년간 쉬다가 서울에 돌아오니, 서울에 발을 딤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혔다. 복잡한 교통과 항상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좁은 공간은 여유를 완전히 앗아 갔다. 또 물난리가 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신구속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은 더욱 무겁게 나의 가슴을 짓눌렀다. 미국에서의 한적한 생활에 대한 미련을 지우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양심수 석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하루 감옥 체험에 참가하였다. 우리의 현실로 되돌아 온 것이다.

'데드맨워킹'을 보고 떠오른 몇 가지 생각1)

조 광 희 회원

내가 경애해 마지 않는 파스칼은 인간의 처지를,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처형될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어서 그러한 장차 다가올 멸망을 진지하게 근심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열렬히 탐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스칼처럼 집요하게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탐구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유예하고 살아가기 마련이므로 이 세상에는 실존적 고뇌를 안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다수이다. 사실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관념적이라는 말을 듣기 싫상인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회적 존재 자체가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형수들과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어느 시점까지 총괄하기를 강요받는다. 그들의 최후는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값싸게 위안하는 삶의 일상적인 감정과 유희에 자신을 내맡길 정신적 여유랄까 이완이라는 것이 자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물론 사형수의 경우에는 소비할 일상적 즐거움조차 애초에 허용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처지를 소재로 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은 적지 않다. 까뮈가 사형수가 된 베르소를 통하여 자신의 실존적 사상을 드러낸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고, 최근에는 19세에 쓴 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유명한 프랑스작 사강이 의사의 오진으로 시한부인생의 선

1) 이란은 이번호부터 '영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회원 여러분께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이 글은 최근에 사형제도에 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할 여지를 제공한 영화로 호평을 받은 데드 맨 워킹을 소재로 쓴 것입니다.

고를 받은 어느 건축가의 하루를 그린 그리 대단치는 않은 '지나가는 슬픔'이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들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행동에의 열정으로 극복해가던 중국의 혁명가들이 장개석의 군대에게 체포된 후 기차 화통의 불길속으로 던져져 잔혹하게 처형당하기 전에 보이는 영웅적인 모습들은 특별한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

죽음이 예정된 여러 존재들 중에서도 사형수는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국면에서 모두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생물로서의 목숨이 부인되기에 이르러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고, 다음은 권력에 패배하여 모든 힘을 빼앗겼다는 데에서 오는 권리지향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패배감-사형수는 권력의 정점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불의에서 기인한다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이다. 물론 이것은 보통의 사형수의 경우이고, 정의의 편에서 있어 오히려 도덕점인 승리감을 느끼거나, 너무나 불의하여 그 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예전부터 사형제도와 연관된 영화는 적지 않았다. 그러한 영화가 사형제도를 어느 정도의 깊이로 다루는가 하는 관점에서 굳이 분류해본다면 사형장면이 단순히 등장할 뿐인 영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집행이 되는 사례를 다룬 영화, 주인공등이 비록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죄를 짓게 된 동기나 이유를 생각해볼 때 사형수가 정당하거나 또는 동정 받아 마땅하므로 상대적으로 사형제도가 지나친 것이라는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그리고, 사형제도를 정면으로 다루어 그 의미를 따지는 영화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형장면이 단순히 등장할 뿐인 영화는 매우 많지만 그 장면 자체로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자면 '사막의 라이언'이 먼저 생각난다. 안소니 퀸이 아랍민족의 늙은 전사로 열연하였는데, 현대화된 이탈리아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된 후 담담하고도 품위있게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은 영화를 볼 당시에 것 대학에 들어갔던 당시의 나에게는 상당히 깊은 감동을 주었다. 교수형 장면중 또 하나 특이하게 기억되는 것은 '쉰들러 리스트'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유태인수용소 사령관이 연합군의 진주후에 사형집행되는 모습인데, 그가 밟고 선 의자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자 사형집행인이 다소 신경질적으로 그 의자를 발로 걷어차 집행하는 장면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여왕 마고'에서 남주인공이 마지막에 기요틴의 제물이 된 후 여왕 마고로 분한 이자벨 아자니가 그 머리를 수습해가는 장면이나 '장미의 이름'에서 괴물같은 수도사가 화형에 처해지면서 화형대에 매달린 채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 발밑의 장작더미의 불길을 끄려고 입으로 숨을 힘껏 내뱉는 모양도 참 기이한 인상으로 뇌리에

새겨져 있다.

내 생각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영화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만든 후 그 직후에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줄거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 전략을 솜씨있게 구사하기만 하면 중고등학생들과 3년에 한 번쯤 영화를 보는 일부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무척 도식적인 이런 영화로는 프랭크 피어슨 감독의 '침묵의 사형수'가 대표적이다. 관객을 짜릿하게 만드려고 고안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한 음미와는 무관한 부류의 영화들이다. 한국영화로는 유영진 감독의 '아그네스를 위하여'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 사형당하는 최수지에 대하여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종류의 영화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대자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영화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후안무치하고 잔혹한 범죄자를 다룬 영화를 보면 즉시 사형제도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비록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죄를 지은 이유를 생각해볼 때 정당하거나 또는 동정받아 마땅하므로 상대적으로 사형제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로 대표적인 것이 아랑 드롱과 장 가방 주연의 '암흑가의 두 사람'이다. 세기의 미남배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음에도 기요틴의 제물이 되는 모습은 비극적인 정서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팀 로빈스 감독의 '데드맨 워킹'은 이러한 일련의 사형제도를 다룬 영화들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 놓인 영화이다.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기에 선부른 태도로 사형수에 대한 관객의 동정을 사려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공정하게 보여주고 그 중재에 나선 성직자의 고뇌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허구의 창조를 넘어서서 범죄, 양심, 사랑, 신앙에 대한 균형잡힌 사회적 시각의 형상화와 전달에 성공한 작품이다. 영화 데드맨 워킹은 가장 전형적인 사형수 다시 말해 죽어마땅한 사형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형제도를 음미하고자 하는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선불리 어느 결론을 선호하지 않는 지성과 자신의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편파적인 소재를 구하지 않는 진실함을 과시하고 있다. 감독 팀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데드맨 워킹은 사형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외에도 상대적인 다른 면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내 경우에는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사형제

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정이 움직여가는 것을 느꼈다. 혐오스런 사형수 손펜, 가엾은 피해자들의 부모들, 그 중간에선 수녀 수잔 서렌든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건은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담담하게 순리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하여 관객들은 특별한 결론을 강요받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이 영화가 관객의 흥미보다는 사려를 자극하는 흔치 않은 미덕을 가지게 된 이유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소 어색했던 장면은 사형이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 펜이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사형당하기 직전의 사람이 함께 한 대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시시한 잡담을 주고 받는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그 장면은 적잖이 어색했다. 내가 주인공 손 펜이 사형을 당해도 그다지 슬퍼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형직전의 그 시시한 대화에서 느낀 '비현실성'이나 '불의함' 때문이었다. 내가 느낀 '비현실성'이란 인간이란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텐데라는 소박한 경험법칙에 기인한 것이었다. 내 생각에는 이 영화가 사실을 근거하여 만들다 보니 실제 있었던 것을 대체로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실화보다 비현실적인 것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것이 실화였다는 이유로 관객이 그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내가 느낀 '불의함'이란 그 시시한 대화가 감독의 실수가 빚은 장면이 아니라 사형수 손 펜의 자질이 반영된 것으로 볼 경우에 느껴지는 손 펜의 정신적 결함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죄와 패배로 얼룩져 사라져가는 시점에서조차 그런 일상적인 태도를 펼쳐 보일 수도 있는 이완된 정신적 태도에 대한 혐오감을 나는 피하기 어려웠다. 모르겠다. 내가 너무 따지고 드는 것인지. 하지만 파스칼은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처지에 대하여 심각히 고뇌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탐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거늘 그에 비추어본다면 그는 괴물 중의 괴물인 것이다. 사실은 그가 사형당해 마땅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정신적 결함에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데드맨 워킹에 대한 영화평을 여러 개 접하였지만 사형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던 것이 불만이었으므로 주제넘은 짓이지만 사형제도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내 생각에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선형적이고 논리필연적인 결론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차라리 사형제도가 현명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식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한 논리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외경'과 '전쟁에서의 완전한 집총거부' 따위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

러한 일관성을 관철하는 것은 나같은 평범한 세속의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일 권리를 부여받은 바도 없지만 그것을 자연이나 신으로부터 금지당한 바도 없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범죄가 줄어드는가 하는 실용적인 관점과 사형을 통한 인과응보라는 관점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형을 통한 인과응보라는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지만 사회적인 시각이 부족한 것 같다. 즉, 문제된 범죄의 피해자로서는 복수를 하게 되는 셈이지만 그것이 만일 이 사회의 폭력성을 부추겨 살인범죄파의 증가에 기여한다면 사회 전체로서는 현명한 태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관건은 사형제도의 유지가 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살인범죄의 증감이나 범죄의 증감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요소를 가능한 한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익형량은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여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게다가 그 이익형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그 결론에 따라 제도를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하여 알아보아도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최악은 그로 인하여 범죄마저 증가하는 경우이고, 사형을 폐지할 경우의 최악도 역시 범죄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양자를 비교할 때에는 사형제도라도 폐지한 경우가 설령 값없을 지라도 사형수들의 목숨만이라도 구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증가하는 범죄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고뇌라는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취하더라도 수녀 수잔 서랜든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배어있는 어리석은 제도가 무관심으로 이루어진 현명한 제도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사업 및 업무보고

(8월 1일 - 8월 31일)

1.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75명, 부산·경남지부 27명, 총 202명

(가입 4명 - 박형상, 장철우, 진효근, 김현종 회원)

(탈퇴 1명 - 최재호 회원)

2. 모임 주요활동 및 사업 보고

가. 96년 8월 정기월례회 및 임시총회

일시 : 8. 30 (금)

장소 : 민변사무실

- 사업 및 업무보고 (별첨)

- 월례회 안건

1) 신입회원 가입 승인의 건 (입회원서 별첨)

- 박영립, 정주식, 김주영 변호사(일반회원), 허경미 미국뉴욕주변호사(특별회원)의 신입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칙의 규정에 따라 가입을 승인함.

2) 변론비용 출연과 기획소송의 비용지급 등의 원칙에 관한 건

- 의견 수렴 후 집행위원회에 논의와 연구를 위임.

3) 한총련 '96 통일행사 구속자 변론과 관련한 자유토론

회장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각 회원
을 가짐.

인사

위에 대한 항의서한 및 보도자료 발표 / 8. 9 (금)

전경련의 주장을 비판한다' 성명서 발표 / 8. 13 (화)

주범에 대한 8·15특사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 / 8.14(수)

· 경찰의 원천봉쇄조치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 / 8.19(월)

우려하며' 성명서 발표 / 8. 21 (수)

선고 결과를 보고' 성명서 발표 / 8. 26 (월)

불법 방해에 대한 민사소송 :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학 2) : 총학생회 활동 관련 부당 징계 철회의 건 /

손해배상청구의 건 / 안상운 회원

대 활동가조직 사건 관련 - 국보 / 안봉진, 신장수, 정

사건 관련 - 국보 / 신장수 회원

자 / 현재 접견팀 구성 운영 전격 결과 최하 후 변호

사. 홍성담 : 여권발급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 안상운 회원

(3) 변론매뉴얼 작성 진행중 (8월 10일 경 발송예정)

(4) 유중원 회원의 보조(150만원) 등으로 사무국에 팩스 새로 마련

(5) 단국대 간수 교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대응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등에 진정서 제출, 각 언론사 및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에 '무하마드 간수 교수 사건에 대한 안기부 수사발표에 관한 보도자료' 발송

(6) 제9차년도 회원명부 제작 발송 / 8. 2 (금)

(7)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개최 / 민가협, 민변, 민교협, 민주노총 등 사회 제단체 - 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6인 선언에 회원 전원 참여

(8)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철폐 - 최근 공안탄압을 우려하는 인권단체 109인의 선언참여/ 집행위원 전원

(9)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300인 발기 제안자 구성 참여 / 집행위원 및 사무차장

(10) 무죄사건변론자료집 정보 수집중

- 현재 선정된 사건 : 강기훈, 홍성담, 박충렬, 김기웅, 배병성, 김보은, 이지문, 김보은, 이문옥, 이창복, 이도행 사건 등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자, 집필방법 등을 확정하고 오는 10. 25 까지 제작할 예정(11)

(11)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주최

- 민교협, 민변, 5. 18 국민위원회 공동 / 8. 29 (목)

(12) '가정평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김문희, 정연순 회원 결합

(13) 민족작가회의, '민간차원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심포지움 참가 / 김인희 회원/
8. 30 (금)

라. 상임위원회 보고

▣ 기획위원회

가. 8. 21 (수) 19:00 민변 사무실

가. 고문방지협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중

나. 인권협 보고

△ 우토로 마을 철거 반대 관련 일본대사관 시위,

△ 8. 3~9까지 유엔인권소위에서 불처벌 문제 논의 회의에 곽노현 교수, 이성훈씨 등 대표로 파견

△ 학생들의 안전과 연대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8. 20(화)

△ 연대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신고센타 개설, 피해사례 접수, 피해사례자료집 준비중

△ 국제민간단체 불처벌워크샵 참가 보고회 / 8월 29일 민변 사무실

- 보고자 : 곽노현 교수

▣ 회원위원회

가. 동호회 소식

등산모임 : 청계산 / 8. 14 (토)

바둑모임 : 도남기원 / 8. 22 (금)

마. 상설특별위원회 보고

▣ 출판·홍보위원회

8. 6 (화) 민변사무실

소식지, 회지 편집방향 논의

▣ 노동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가.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 참가

(1)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혁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토론회 / 8. 28 (수)

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참가

가. 8. 21 (수) 12시

△ 노사관계개혁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발제자로 김선수 회원을 선정

△ 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이론지인 '현장에서 미래로'의 고정란을 모임 의 노동위원회 판례분석팀(박수근, 정태상, 천낙봉, 김우진 회원)에서 맡기로 함

△ 전국해고노동자원상복지지원대책위에 노동위원회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함

△ 다음 회의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사관계개 혁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청회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함

▣ 국제연대위원회

▣ 언론위원회

▣ 경제정의위원회

가. 8. 27 (화) 19:30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재벌문제에 관하여 발제 및 토의 / 발제 김석연 위원

▣ 환경위원회

가. 8. 5 (월) 민변사무실

- 시화호 가처분 소송과 남부저유소 행정소송을 검토 추진키로 결정

나. 8. 7 (수)

- 시화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 논의

- 1차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도착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들 확보 문제로 담당 변호사들과 박용신간사 등이 조만간에 만나서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
- 이 사건에 대한 담당변호사로 윤종현, 윤기원, 오세훈 위원 선정
- 남부저유소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 모임에서 이재명 회원의 발제 및 상황보고를 듣고, 기획소송 추진여부 및 환경위원회가 담당할 업무범위를 정하기로 함

▣ 사법위원회

바. 임시특별위원회 보고

▣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 준비모임

가. 교류회의 전체일정 확정

(1) 전체주제

한국 - “한국내 미군주둔과 한미안보조약 관련된 법률제반 문제”

일본 - “오끼나와 주둔 미군문제 및 일미안보조약 관련 문제”

(2) 분과주제

제1분과 (사법)

사법제도일반, 사법시험, 법조양성개혁프로그램

제2분과 (노동)

직업병, 노동재해, 과로사

제3분과 (시민인권)

일본 - 약물피해, 수혈 에이즈감염, 사채(私債)문제 등

한국 - 장애자 인권

(3) 이번 교류회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귀화하지 않은 재일교포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나누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교류를 트는 계기를 가지기로 함

▣ 북한 쌀 지원 임시특별위원회

가. 경과보고

- 현재 쌀보내기 임시특별위원회는 회원등으로 부터 모금한 돈(총액 1214만원)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고, 아울러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쌀을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기구를 통한 쌀지원에 관하여는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지원창구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북한주민접촉신청에 관하여 통일원에서 9.15일까지 이에 대한 답신을 해 주기로 함

▣ 5·18 대책소위원회

가. 8. 28 (수) 18:00 민변사무실

1심 선고 공판 판결 후 대응책 논의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¹⁾

수신 : 중부경찰서장

우리 모임은 지난 1996. 8. 8부터 3일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8. 8 11:00부터 13:00까지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중앙극장앞을 지나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오는 시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주최단체중의 하나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1996. 8. 5 관할경찰서장인 중부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민가협으로 하고 시위행진의 진로와 행사준비물, 질서유지인 등을 명시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8. 8 11:00경 우리 모임의 회원을 포함한 150여명의 행사참여자는 신고한 바대로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중앙극장쪽으로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불과 50여미터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부경찰서장은 시위참여자들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의(죄수복)'를 입고 포승 줄에 묶인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100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시위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의 회원인 변호사 김칠준 등이 시위진행자들이 착용한 옷은 '수의'가 아니고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사 시위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위용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아무런 근거없이 시위를 막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찰력을 동원한 위법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중부경찰서장은 위법행위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1) 다음의 성명서들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입니다.

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입니다. 따라서 중부경찰서장은 집시법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일정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 금지통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를 무력으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집시법 제18조에 규정된 위법한 시위, 즉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유타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에 하는 집회 또는 시위, 국회 의사당 등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만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임의 회원이 참여한 위 시위에서 누구도 위험한 물건이나 기구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위도중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예정된 진행방향으로 침묵을 지키고 전진하는 평화시위였습니다. 시위금지시간도 아니었고 시위금지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단순히 당시 시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이러한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지난 7월 13일 탑골공원에서의 시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금지한 바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경찰 전체의 집시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이번 시위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경찰최고책임자에게 엄중 항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집회·시위 방해행위를 한 중부경찰서장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1996. 8. 9.

성명서

-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전경련의 주장을 비판한다 -

지난 8. 13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있었던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한 관련업계간담회' 석상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는 개방화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하여 ① 재벌계열사 채무보증 단계적으로 완전해소 ② 재벌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제한 강화(상품, 용역거래외에 자산, 자금거래 포함) ③ 재벌계열사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친족독립경영회사 신설, (2) 경쟁촉진을 위하여 ① 경쟁제한적 법령, 처분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강화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방식으로 전환 ③ 금융, 보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강화 ⑤ 사업활동 방해행위 규제강화 (3)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과징금 인상 ② 이행강제금 제도와 긴급조치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개정안 내용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세우는데 오히려 미흡하며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할 것이고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민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경제력집중 억제대책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권 독점의 폐지와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위 개정안에 대한 전경련측의 비난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이 내세우는 근거인 규제완화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뇌리를 계속 키워온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질적인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기업들의 경쟁체질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경제력집중억제정책과 경쟁촉진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행되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경련의 주장은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경쟁체질 강화를 통한 진정한 기업경쟁력의 확보가 아니라 재벌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억제와 경쟁촉진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결국 재벌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 소비자등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또한 우리 경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자본주의 질서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공의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성장제일주의 정책하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이 그러한 특혜를 통해 축적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보다는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외형을 키우는데 급급했으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정당한 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재벌 자체의 외형성장만을 추구하여 온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제는 재벌 스스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경련의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보완하여 경제력집중억제정책과 경쟁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가 재벌들의 주장에 밀려 위 개정안보다도 더 후퇴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6. 8. 16.

성명서

- 정부의 대형 부정·비리사건 주범에 대한 8.15특사에 대하여-

민족의 해방과 새조국의 출범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울곡비리, 동화은행 비리, 슬롯머신 사건 등 대형 부정·비리사건의 주범들에 대하여 특사와 복권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현 정권 스스로 개혁의지의 포기를 자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들 대형 부정·비리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아직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화합이라는 논리도 이번 사면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특사등은 오로지 현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도 발견할 수 없다.

특별사면은 군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사법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비리주범들에 대하여 대규모 사면 등을 한 바 있고, 그에 이어 이번에도 이러한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열망하는 국민들로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2·12, 5·18사건의 주요인사가 단죄받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12·12와 5·18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5·6공 독재정권의 잔재청산 작업이 절실한 것으로 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악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의 사면·복권 등이 필요한 것인 바, 이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대형부정·비리사건의 주범에 대한 처벌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사면·복권 한 것은 현 정부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던 비리척결의지가 그나마도 소멸하였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이번 사면 등은 결국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협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또한 우리 민변은 진정한 정의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이러한 개혁적인 태도가 전·노재판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1996. 8. 14

성명서

한총련의 연세대농성사태와 경찰의 원천봉쇄조치에 대하여

한총련 학생들의 집회 강행과 이를 불허하는 정부와 사이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한총련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연세대에서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 사태의 해결책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는 그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논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한총련의 이번 시위에 대하여 시위의 방법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경찰의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시위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한총련의 연세대 농성사태, 이에 대한 경찰의 연세대 진입과 봉쇄조치로 인하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땅의 형과 아우는 서로 투쟁의 상대방이 되어 최루탄, 쇠파이프, 돌멩이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고 경찰의 건물봉쇄조치로 인하여 건물내에 있는 학생들은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최소한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더 이상 이번 시위로 인하여 이땅의 젊은이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고뇌에 찬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건물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음식물과 부상자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반입을 즉시 허용하여야 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과 한총련은 인내와 대화로 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은 강경진압이 가져올 엄청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경진압 방침을 재고할 것이며,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봉쇄를 풀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과 한총련은 이번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회복하기 힘든 분노를 자아낸 만큼 앞으로는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96. 8. 19

성명서

한총련의 대량구속사태를 우려하며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둘러싸고 행사를 강행하려는 한총련과 이를 원천봉쇄하려는 공권력사이에 벌어진 대치국면은 우려했던 대로 경찰이 지난 20일 새벽 연세대 종합관에 헬기를 비롯한 1만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5천여명의 학생을 연행하는 등 강경진압 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 기소, 재판을 비롯한 일련의 사법처리 절차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진전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여러 비이성적인 모습들이 드러났는바, 이에 대하여 민변은 몇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이번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우리사회의 일원인 학생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공세와 진압으로 일관하였는바, 이것은 한총련의 노선에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 19일 경찰청장의 시위진압에 총기사용불사 발언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이성적 의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이번사태가 민간통일운동 논의에 대한 억압, 남북교류창구 단일화, 비민주적인 냉전적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맥락을 덮어둔채, 시위방식의 과격행동 일면만을 강조함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한 측면이 적지 않고 할 것이다.

셋째, 이번시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학생에 대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에 대한 다수의 협박성전화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에 민변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통일정책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의 경찰이 보여준 일련의 공격적이고 강경한 시위대응 방식은 경찰과 학생 양 쪽의 엄청난 무익한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바, 이번사태를 계기로 시위대응 방식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총기사용 불사 발언 등을 한 경찰청장을 문책하여야 한다.

셋째, 이번에 연행된 수천명의 학생에 대하여 상당수를 구속하는 등의 강경한 처리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성적이고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협박 기타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비열한 행태에 대한 사법권 수호차원에서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6. 8. 21

성명서

- 12·12 및 5·18 사건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

오늘 군사반란 및 내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뒤 정권을 찬탈하여 독재와 부정축재를 일삼은 전두환에게 사형이,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되는 등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것은 80년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서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의 역사적 의의와 국민의 관심에 비추어볼 때 1심재판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급심 재판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 재판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법원이 전두환 등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군사반란 및 내란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 바 통치행위론, 당시 위기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었다는 정당행위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 그 동안 피고인들이 하여 온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으로서 실정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내란목적살인부분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그 동안 모두가 요구하여 온 광주에서의 발표명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결과로서 법원이 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 형량에 관하여 살펴볼 때, 군사반란 및 내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상 그 수괴인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도 못미치는 가벼

운 형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현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우리 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전후에 단 한차례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이 재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재판의 의의를 훼손하려 하고, 변호인들이 집단 사임을 하여 변론을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하여 서둘러 심리를 종결한 인상을 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있을 상급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시정되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납득할 만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재판이 반역사적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를 확보하여 역사 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남은 재판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1996. 8. 26

목격!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 자료집] 발행!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에는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 사건, 진상호 씨 사건, 신희주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의 개요, 판결문, 변론요지서, 신문기사스크랩 등이 실려 있다.

판례를 통해 최근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과 안기부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위험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제동을 걸었음은 물론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더라도 국가의 안전존립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맹백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우선적인 선택을 부여한 사법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사문화될 국가보안법이 훗날 역사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본다.

총 페이지 144쪽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715-9185)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하루소식과 최근 한총련 사태에 관한 영문보고서, 해외인권단체링크가 담겨있습니다.

